

의안번호	2208555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5.04.24.
추계번호	25E123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방연구개발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생산 물자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,622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1조 3,109억원(연평균 2,62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9,792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3,316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생산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 (안 제105조제1항제1호)	-2,622	-2,622	-2,622	-2,622	-2,622	-13,109	-2,622
- 국세(74.7%)	-1,958	-1,958	-1,958	-1,958	-1,958	-9,792	-1,958
- 지방소비세(25.3%)	-663	-663	-663	-663	-663	-3,316	-66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1호	○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 ¹⁾ 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	-

- 1)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 “국방연구개발”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.
- 가. 무기체계의 연구개발
 - 나. 「방위사업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
 - 다.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
 - 라.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
 - 마.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1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세수효과는 ‘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생산 물자의 공급가액 × 세율 10%’로 추계
- 공급가액은 최근 관련 용역 및 물자 공급에 대한 계약금액 자료²⁾(방위사업청 제공)를 활용하여 추정하되, 추계기간 공급가액이 최근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 - 연도별 계약 건별 금액 자료를 합산하되,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총액의 1/11을 제외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산출
 - 국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및 물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공급가액)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그에 따라 생산하는 물자의 최근 공급가액은 2020~2024년 연평균 2조 6,217억원 수준

2) 현행 영세율 대상(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,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)으로 구분되어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건은 포함하지 않은 자료임

[표 2]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생산 물자의 공급가액

(단위: 억원, 건)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공급가액	5,642	31,576	39,543	41,576	12,749	26,217
(건수)	(17)	(125)	(379)	(332)	(143)	(185)

주: 국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및 물자를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로,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

자료: 방위사업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생산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시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,622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1조 3,109억원(연평균 2,62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추계기간 해당 공급가액이 최근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연간 공급가액에 10% 세율을 반영해 추정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9,792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3,316억원 감소 예상

[표 3]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및 생산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 및 생산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(안 제105 조제1항제1호)	-2,622	-2,622	-2,622	-2,622	-2,622	-13,109	-2,622
- 국세(74.7%)	-1,958	-1,958	-1,958	-1,958	-1,958	-9,792	-1,958
- 지방소비세(25.3%)	-663	-663	-663	-663	-663	-3,316	-663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